

도시계획법시행령(3)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81조(회의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도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 ⑤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3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인까지로 할 수 있다.

-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0인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인구가 많은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부시장·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 ③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제82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 제7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수당 등)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로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87조(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표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 서비스의 제공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활용 및 표준화 등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의 작성기준 및 수립절차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지사의 인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명시한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준용하고자 하는 조항
3.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의 준용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경기도 외의 지역에 있는 군에 한한다)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경기도 외의 지역에 있는 군에 한한다)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결정
가. 5제곱킬로미터 미만인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도시계획구역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별 칙

제90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도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관한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주민의견 반영여부의 통보에 관한 제2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공람을 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 도시계획결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을 신청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④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제24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⑤ 지형도면의 승인기한에 관한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지형도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청사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중 공영차고지는 동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은 동조제2항제4호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광장으로 본다.

제6조(전용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은 제29조제1호가목(1)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62조·제6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 ②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 ③ 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 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종 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 중 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와 제5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고도 또는 최저고도를 정하여 지정된 고도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또는 최저고도지구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존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자원보존지구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지구는 제30조제2항제4호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제30조제2항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상세계획안에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지구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3호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②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2 내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82조”를 “도시계획법 제69조”로 한다.

③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시기란 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⑥ 지적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⑧ 전통사찰보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리목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⑨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적용대상구역”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⑩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⑫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⑮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제9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⑯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 “동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⑱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⑲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⑳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본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다목 및 제14호,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 내지 제30조,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6조와 제88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52조, 제59조 내지 제69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96조, 제9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를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7조 내지 제58조, 제63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②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2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④ 도시자기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제4항”을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⑤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⑧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 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⑩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8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66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도시계획법 제71조”로 한다.

⑪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⑫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⑭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6조”로 한다.

⑮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⑯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의 내용란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공공시설용지”를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한다.

⑰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50조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빙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원종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침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마.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5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비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 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공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4) 보전녹지지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미만

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4. 토석의 채취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나.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기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지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을 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1)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 (2)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나)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1) 녹지지역안에서 기준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4) 국·공유의 잡종재산증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이동이 용이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암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인

- 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 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별표 5]**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암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인 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 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인 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와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 #### [별표 7]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 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장례식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별표 7 제2호아목의 공장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

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중 산업전 시장 및 박람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 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12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및 복지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14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미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1조제1항제15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기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 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 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 시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비단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7조제2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동호기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 이하인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기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 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야.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p>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p>	<p>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p> <p>3. 제1종근린생활시설</p> <p>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p> <p>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p> <p>마. 택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4. 제2종근린생활시설</p> <p>가. 일반음식점·기원</p> <p>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p> <p>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타. 암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p> <p>5. 문화 및 집회시설</p> <p>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마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6. 판매 및 영업시설</p> <p>가. 도매시장</p> <p>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p>
	<p>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p> <p>1. 단독주택</p> <p>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p> <p>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p>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p>라. 공관</p> <p>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p> <p>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p> <p>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p> <p>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p> <p>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p>	<p>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p> <p>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타. 암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p> <p>5. 문화 및 집회시설</p> <p>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마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6. 판매 및 영업시설</p> <p>가. 도매시장</p> <p>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p>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한국전통호텔 ·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바. 정비공장
마. 철도역사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사. 운전학원 · 정비학원
바. 공항시설	12. 위탁시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의료시설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가. 축사(양잠 · 양봉 ·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 병원(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다. 특수목욕장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축장
다. 장례식장	마. 투전기업소 및 키지노업소	라. 도계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마. 버섯재배사
가. 학교(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13. 공장	바. 종묘배양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사. 화초 및 분자 등의 온실
다. 직업훈련소	14. 창고시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
바. 도서관	나. 하역장	나. 고물상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9.8.7. 개정)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쟁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 자기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9.8.7. 개정)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가. 교도소(구치소 ·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9. 운동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간생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가. 탁구장 · 체육도장 ·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위험물제조소	다. 군사시설
나. 체육관	라. 위험물저장소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다. 운동장(육상 · 구기 · 볼링 · 수영 · 스케이트 · 로울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마. 액화가스취급소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10. 업무시설	바. 액화가스판매소	바. 전신전화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고압가스총전 · 저장소	아. 통신용시설
11. 숙박시설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묘지관련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 여관 및 여인숙)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화장장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 수상관광호텔 ·	가. 주차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세차장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다. 폐차장	21. 관광휴게시설
	라. 검사장	가. 야외음악당
	마. 매매장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화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